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신정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943 발의연월일: 2024. 10. 28.

발 의 자:신정훈·조 국·이건태

차지호 · 김현정 · 전재수

이재관 • 부승찬 • 이정문

김영호 · 양부남 · 정성호

박용갑 • 임미애 • 조인철

모경종 • 문대림 • 강득구

의원(18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 상품권의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,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이나 사업체 등에 대하여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거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농·어촌 지역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가 많지 않아, 지역주민들이 상품권을 활용하여 식료품이나 생필품 또는 농업 및 어업 활동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농·어촌지역 주민들의 상품권 사용처 확대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「농업・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또는 「수산업・어촌 발

전 기본법」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농촌 또는 어촌에 소재한 사업장에 대하여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는 등록 거부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(안 제7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제2호 중 "경우"를 "경우."로 하고,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농촌에 소재한 사업장에 대하여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또는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어촌에 소재한 사업장에 대하여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7조(가맹점의 등록) ① (생	제7조(가맹점의 등록) ① (현행과		
략)	같음)		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	2		
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			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		
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			
있다.		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		
2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	2		
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			
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<u>경</u>	<u>경</u>		
<u>우</u> <단서 신설>	<u>우.</u> <u>다만, 「농업·농촌 및 식</u>		
	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4호		
	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같은		
	조 제5호에 따른 농촌에 소재		
	한 사업장에 대하여 가맹점		
	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또는		
	<u>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</u>		
	법」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		
	자단체가 같은 조 제6호에 따		
	른 어촌에 소재한 사업장에		
	대하여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		
	는 경우는 제외한다.		
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